

공유토지 분할개시결정 공고

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 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「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」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**3주** 이내에 **예천군 종합민원과 지적담당**으로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.

1. 공고 번호 : 예천군 공고 제 2014-800호
2. 공고 기간 : 2014. 12. 26 ~ 2015. 1. 16.
3. 공고 내용 :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

토 지 표 시						공유 토지분할 신청인 및 동의인			비 고 (동의인)
시·군·구	읍·면	동·리	지 번	지목	면적(㎡)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
예 천	예 천	동 본	533-1	대	79	진 희 완 박 찬 규	1952.05.05 1978.08.16	예천군 예천읍 시장로 112-1 예천군 예천읍 맛고을길 100-1	○
예 천	감 천	포 리	385-8	대	435	예천농업협동조합 안 옥 자	1945.03.04	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222-220 예천군 감천면 포리2길 11-1	○
예 천	풍 양	청 운	33	대	769	정 맹 진 정 남 진	1951.04.20. 1956.01.07	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680번길 132, 302호 (봉명동,한울주택) 예천군 풍양면 청운3리길 38-4	○

2014년 12월 26일

예 천 군 수

